

산업체위탁교육운영규정

제 정 1995. 3.
개 정 1999. 3.
개 정 2010. 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59조에 의거 산업체 위탁교육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업체의 범위) 산업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산업체로서 본 대학과 산업체위탁교육 또는 산학협력 자매결연을 체결한 산업체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규정된 학교
3. 공보처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금융기관
7.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국민연금법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적용 사업장 또는 의료보험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적용 사업장)

제3조 (위탁형태) 위탁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위탁: 산업체가 단독으로 소정의 인원을 대학에 모집단위별로 위탁한 경우
2. 연합위탁: 2개 이상의 산업체가 연합하여 대학에 모집단위별로 위탁한 경우

제2장 교육과정 운영

제4조 (학생수 및 학급편성) ①위탁학생 수는 본 대학의 교육시설 및 교원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본 대학이 자율 결정하되, 당해 연도 총 입학정원의 50%,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위탁생은 20명 이상으로 별도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학급편성이 불가능할 경우는 본 대학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기존 정원의 위탁생 포함)까지 혼합 편성할 수 있다.

③위탁학생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설치분야) 본 대학에 설치된 전공분야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공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위탁생을 별도의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선발기준) ①위탁생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3학년 편입학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산업체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로 한다.

②위탁생은 산업체의 추천에 의하여 본 대학에서 별도로 인정한 신·편입학 전형 절차를 거쳐 입학

허가한다.

③위탁생은 산업체의 근무 직종과 연계성이 있는 전공분야에 지원을 권장한다.

제8조 (학사관리) ①위탁생에 대한 학사관리는 본 대학 학칙에 의한다.

②위탁생이 위탁산업체의 동의 없이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는 위탁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제적처리할 수 있다.

제9조 (교과목 이수) 위탁생의 교과목 이수는 본 대학 학칙에 의한 졸업소요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①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위탁산업체의 책임 하에 본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일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당해 전공분야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되,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요원 활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①산업체와 본 대학의 산학협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동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재 공동개발 참여 및 지원
2.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 의 공동연구 추진
3. 정규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4. 교육용 실험실습시설의 공동개발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5.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②산업체내에 강의실 또는 실험실습 시설이 가능한 경우는 위탁생만으로 편성된 별도 학급의 강의 또는 실험실습교육을 산업현장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 (강사위촉) 위탁교육의 강의는 전임교원이 강의를 전담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산업체 임직원 등 적격자를 본 대학 겸임교원인사규정 또는 시간강사위촉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겸임교원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위탁교육심의

제13조 (구성)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4조 (심의사항) 교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뢰 산업체의 적부
2. 위탁생의 선발기준
3.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4.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5.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6. 학교와 산업체의 상호지원
7. 기타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기타) 산업체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